

재무구조개선(자구)계획이행상황명세서					
과세연도 :					
대 상 자	①법 인 명		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대표자성명			④주 민 등 록 번 호	
	⑤본점소재지				
(☎ :)					
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(승인일자 :)					
이 행 연 도	1 차 연 도		2 차 연 도		3 차 연 도
⑥부 채 비 율					
⑦기 준 부 채 비 율					
⑧(⑥-⑦)초과비율					
자 구 계 획 이 행 상 황 (승인일자 :)					
⑨양 도 · 수 증 대 금 누 계		⑩사용액 누 계		⑪미사용액 누 계	
이 행 연 도	1 차 연 도		2 차 연 도		3 차 연 도
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					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☐ 제37조제18항 ☐ 제38조제8항] 의 규정에 의하여 ()차연도재무구조개선(자구)계획이행상황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인 (서명 또는 인) 확인자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					
구비서류 1.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2.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※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(제1호 및 제2호)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.					

작 성 요 령

1.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(자구)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 연도분부터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2.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⑥부채비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4. ⑦기분부채비율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5.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.